

농업분야 남북합의가 갖는 의미와 과제

김 영 윤

통일연구원 북한경제연구센터 소장

남북은 지난 2005년 8월 19일 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북한의 일정 지역 협동농장을 선정해 남측이 내년부터 영농기술 등을 지원키로 하는 등의 7개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는 모두 북한이 당면한 농업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초점이 모여져 있어 지금까지 그 어느 남북한간 합의보다도 더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 당국간 차원에서 합의한 농업분야 협력내용은 실로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내용과 그 내용이 합의하고 있는 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은 일정한 지역의 북한 협동농장을 선정해 2006년부터 농장들의 육묘시설,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기자재, 배합 사료 및 영농기술 등을 지원하는 한편, 북한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남측 전문가들과 기술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해당 지역의 방문을 보장하도록 하도록 했다. 그리고 협력사업의 성과에 기초해 그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북한 협동농장을 협력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일정지역을 농장화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협동농장을 선정함으로써 기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본 사업을 통해 그동안 실제 파악이 미흡했던 북한 협동농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으며, 북한 협동농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 그 개선점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기타 협동농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합의는 북한 농업분야가 안고 있는 문제를 타개하려는 총체적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실 북한 농업은 현대적 농자생산기술을 확보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이를 가공, 보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태부족한 상태였다. 또한 육종 및 재배기술, 농약생산 및 종합적 병해충 관리체계 형성과 산림 병해충 방제기술도 크게 미흡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는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 있다. 2006년부터 남과 북은 현대적인 종자생산과 가공·보관·처리시설을 2006년부터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우량 유전자원의 교환과 육종 및 재배기술, 생물농약의 개발과 생산기술, 농작물 생육예보 및 종합적 병해충 관리체계(IPM) 형성하는 한편, 더 나아가 축산, 과수, 채소, 잡곡, 특용작물 등의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그 밖에도 남과 북은 토지 및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양묘장 조성

과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자원을 늘려 나가는 데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북한 동·서부지역에 각각 1개씩의 양묘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상과 같은 농업분야의 협력은 기술 인력의 강력한 상호 교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분야의 남북한 이질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 인력의 상호 교류 등을 통해 양측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농업기술을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남북 농업발전에서도 상승 작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의 기후 및 토양 여건에 적합한 묘목을 적기에 직접 생산·공급하여 조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북한 산림자원을 복구함으로써 우기시 산사태를 예방, 당면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탕을 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아울러 축산, 과수, 채소, 잡곡, 특용작물 등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 합의는 남북간 계약재배를 통한 협력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고 있는 남한의 농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점에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본 남북농업분야의 협력을 위한 합의는 북한이 2005년 설정한 경제 주공전선으로서의 농업발전을 실천에 옮기려는 의도를 보여주면서도,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대내 개혁과 대외 개방을 동시에 확인시켜 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동안 남북한 농업분야의 협력형태, 다시 말해 대북 식량 및 비료지원 등 일회성 차원의 지원에 그친 농업분야의 협력을 근본적으로 바꿈으로써 생존 차원의 북한 농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다.

향후 농업분야의 실질적 남북협력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북한 농업실태를 파악, 그 문제점을 규명할 수 있는 북한의 협력이 전제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경우 북한 지역의 수시 방문과 함께 북한 농업분야의 필요 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북한 농업구조 및 정책, 기술 등 여러 면에서 존재하고 하고 있는 차이를 극복하려는 북한 당국의 성의와 스스로의 노력이 뒤따라야 농업분야의 성공적 협력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